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26
------------	------

2021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이호대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1년 04월 29일 상정, 수정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호대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한 학생 성장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마을기관과 법인에 대한 위탁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혁신교육지구 사업 영역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사업 범위를 현재 추진되는 정책 방향 및 운영 방안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 나. 혁신교육지구 정책 방향에 맞춰 민간위탁 조항을 첨가함(안 제4조)
- 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기능을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함(안 제7조).
- 라. 공동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호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326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 방과 후활동 지원 사업’ 으로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을 민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는바, 개정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안 제3조제5호)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5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자치동아리 발굴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76개로 대부분 자치구 예산으로 자치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자치구의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2021년 사업내역은 [별첨1]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자치구 주도의 사업방식으로는 혁신교육지구별로 자치구의 역량에 따라 사업 수혜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교육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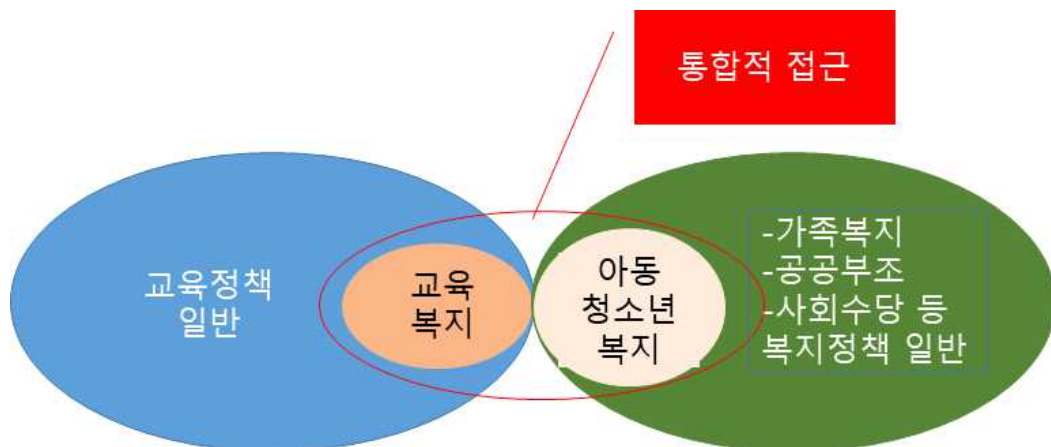
- 다만, 안 제3조 본문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4조제3항의 ‘어린이·청소년’도 동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안 제3조제5호의 ‘어린이·청소년’은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어린이·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행정관리담당관-6162, 2021.4.14).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외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5호와 같이(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단위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라는 사업특성과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른 사업방식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림1] 혁신교육지구 사업 영역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 모델



-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진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의 소외문제, 가정에서의 지원 및 돌봄 부담 증가, 학업 공백 및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교육복지 지

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¹⁾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이미 「2021 교육후견인제 시범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 교육후견인제 시범 운영 비용추계

항 목	내 용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 고
210	교육청업무외부위탁	10,000,000원 × 1식	10,000	참여협력담당관 예산 (혁신교육지구)
320	민간위탁비	10,000,000원 × 30기관	300,000	추경
230	업무추진비	1,000,000원 × 30명	30,000	추경
계			340,000	

○ 다만 교육청이 예정하고 있는 ‘교육후견인제’의 경우 사업 수혜대상이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돌봄 및 학습 지원 필요한 학생,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탈북학생, 조손가정 등의 기존의 교육복지 수혜 대상과 차이가 없고, ‘교육후견인’의 역할 또한 방과후 돌봄 지원, 상담, 원격수업 지원 등 기존의 멘토, 코칭 사업들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표2] 교육후견인 활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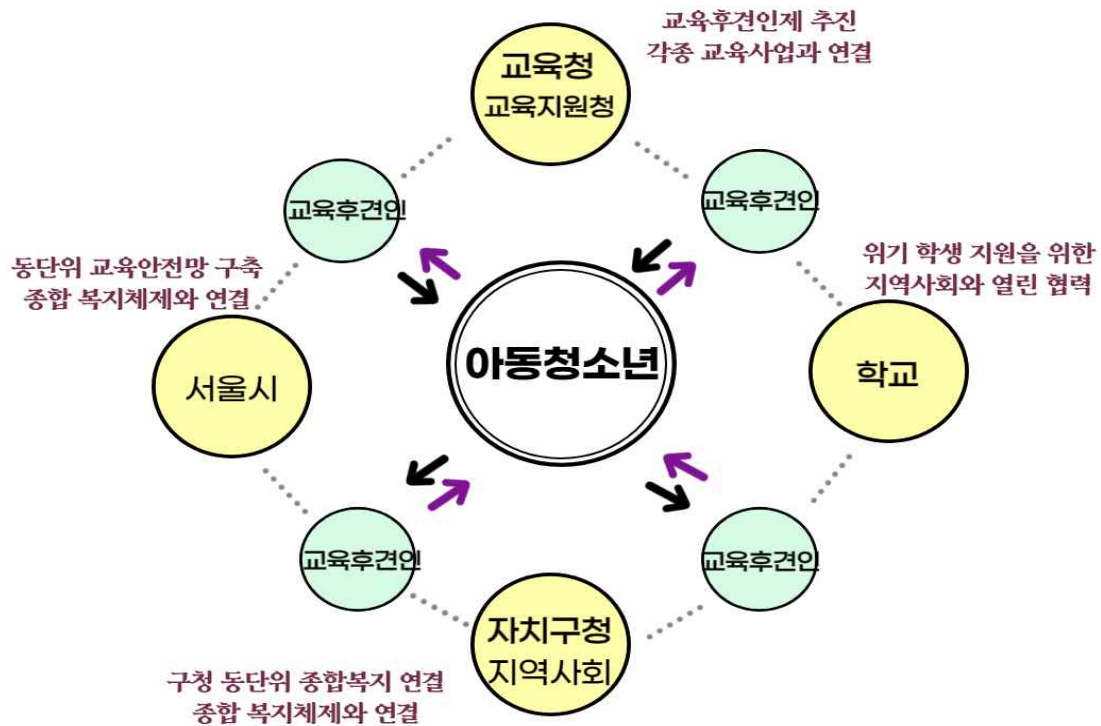
	가정 연계	학교 연계	지역사회 연계
	· 원격수업 지원 · 통학지원 · 책읽기, 부족한 교과 지원 등	· 상담, 정서지원 · 치료기관 동행 등	· 일상 생활 관리 · 방과후 돌봄 지원 등

교육청은 ‘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동 사업만의 독자성, 차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²⁾

1) 한국일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 2021.3.11.

2) 현재 11개 교육지원청별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는 ‘교육후견인제’와 유사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진로 코디네이터 사업,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지역기반

[그림2] 교육후견인의 활동 체제



3)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0조제1항 및 제5항)

-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및 제5항은 현행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여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34명으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서 32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 위원은 동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별첨3] 참조).

○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의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이 부위원장을 두려는 취지는 위원의 과반수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공동위원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합니다.

○ 그러나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한 목적이 각 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관의 각 영역을 대표하도록 하면서 위원들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발전을 위한 공감대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특정영역(민간부문)을 고려한 부위원장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위원장 중 일부의 역할이 형해화 되어 공동위원장을 둔 취지와 효과성이 반감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당연직 위원장(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외의 위촉직 위원장은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위원장이 위원장보다 더 강한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부위원장제를 둔 취지가 민간위원의 의견 조율을 위함이라면 별도의 간사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585, 2021.4.22.)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용어를 통일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Ⅶ.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26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9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I. 수정이유

- 용어를 통일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II. 주요내용

가.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어린이·청소년 방과후활동”을 “방과후활동”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학교-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1.~4.(생략) <u><신설></u>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1.~4.(현행과 같음) 5. <u>어린이·청소년 방과후 활동</u> 지원 사업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1.~4.(현행과 같음) 5. <u>방과후활동</u> 지원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u>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u>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u>학교-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u>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u>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u>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u>위원장과</u> 간사를 둔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u>위원장, 부위원장,</u> 간사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 그 업무를 대리한다.</u>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u>위원장과</u> 간사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3호 중 “학교 밖”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을 “관련 주요 사항”으로 하고, 제2호 중 “협력”을 “혁신교육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1. (생략) 2. (생략) 3. <u>학교 밖</u>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략) <u><신 설></u> 5.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6.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현행과 같음) 5. <u>방과후활동 지원 사업</u> 6.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혁신교육지구 운영 <u>지원체제</u> <u>구축 및 발전 방향</u> 협의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교육청 단위의 <u>협력</u>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 안 협의 3. ~ 4. (생략)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u>관련 주요 사항</u> -- 2. ----- ----- <u>혁신교육지구</u> ----- ----- ----- 3. ~ 4. (현행과 같음)